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안내문 ◆

올해 2018년 8월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기준중위소득액을 기준으로 감경률이 100% 감경(무료), 50% 감경(7.5%), 일반(15%)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별 차등)를 기준으로 감경률이 변동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을 변동에 따른 적용대상은 일괄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8월부터 자동 적용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경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센터에서도 8월분 이용료부터 본인부담금을 감경, 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어르신들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2018년 7월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액의 50% 이하	중위소득액의 50% 초과
본인부담 감경률	무료(100% 감면)	50% 감면	해당없음
본인부담률(액)	0%	7.5%	15%

☞ 2018년 8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 (보험료순위)	기초생활수급대상 자	0~25%이하	25~50% 이하	50% 초과
본인부담 감경률	무료(100% 감면)	60% 감면	40% 감면	해당없음
본인부담률(액)	0%	6%	9%	15%

◎ 감경적용기준

가구 원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험료			재산과표액	
	종전 기준	변경기준		종전 기준	변경기준		종전기준	변경기준 균등화재산과표액
		0~25%	25~50%		0~25%	25~50%		
1명	13,900	13,100	21,160	26,630	46,800	62,400	240,000,000	122,000,000
2명	18,600	25,190	91,550	43,710	51,110	78,000		207,000,000
3명	36,030	41,140	106,310	55,740	57,230	93,600		268,000,000
4명	59,930	57,820	119,140	69,110	62,400	112,320		329,000,000
5명	81,830	60,850	125,090	81,690	81,870	137,900		389,000,000
6명이상	99,480	80,650	148,100	93,880	99,840	156,250		450,000,000